

상품카탈로그의 기재와 권리의 효력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배포된 상품 카탈로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실용신안이나 의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지, 만일 등록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출원전에 이들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

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또한 국내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장은 국외에서도 공지·공용되지 않아 신규성이 있다고 본다.

실용신안법이나 의장법의 목적은 새로운 고안이나 의장을 공개하여 이들을 이용케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되므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출원일전부터 동일내용이 상품카탈로그에 기재된 경우라면 이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에 해당되므로 등록받을 수가 없다.

이들이 등록이 되었다면 출원전 국내외에 반포된 상품카탈로그에 공지됨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다.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특허권자인데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특허청은 특허권 또는 그 권리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적장부인 특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있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고 하여 그 권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행사에 불이익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특허권과 관련

하여 타인과 어떤 법률행위(실시권 설정, 질권설정 등)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등록을 바랄 때는 그 등록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는 등록사항으로는 특허청장의 직권사항(심판예고등록 등), 법원 등의 촉탁사항(가입류, 가처분 등), 신청인의 신청사항으로 구분되며 이중 특허권자나 특허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되는 사항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특허권의 설정,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 (2)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3)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4)특허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사항 또는 대리인의 수여, 소멸.
- (5)특허권의 수용, 실시
- (6)심판·항고심판·재심 등의 확정심결.

상표출원때 우선권 주장과 효력은...

상표출원의 우선권주장절차 및 효력을 알고 싶다.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선의 출원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선의 출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선권주장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우선권이란 1국에 상표를 출원한 자가 동일한 상표를 다른 나라에 출원하였을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날로 소급하여 출원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파리조약가맹국 또는 우리나라와 상표 출원에 관한 우선권주장을 인정하는 국가에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상표출원을 하

고 우선권을 주장한다는 뜻과 최초출원국 및 출원일자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게 되면 최초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되는 출원일 소급효과가 생긴다.